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4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54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1. 11.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일, 출석정지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중, 『출석정지 5일』 처분은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4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청구인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와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 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생이다.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2019. 6. 11. 및 2019. 6.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피청구인은 2019. 6. 14.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일, 출석정지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조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9.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9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인 □□□(가해학생)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한 후 ■■■(가해학생) 학생의 자취방으로 갔으며, 청구인은 단지 폭력 현장인 줄 모르고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고, 본 사건의 발생원인 및 경과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학생을 만난 적도 없고,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위해를 입힐 어떤 원인도 이유도 없으며,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다는 판단은 피해학생 위주의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가해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선도의 목적이 아이들의 올바른 선도와 교육에 있다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에게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긴급선

도 조치를 하여 출석정지 하였고, 학폭위 소집 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질의 및 해명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 학폭위를 끝내, 청구인이 이 사건의 객관적인 목격자로서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였다.

라. 청구인은 사건 현장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 등을 보고 있다가 폭력 상황이 발생하자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사진을 찍을 때나 가족관계 등을 거론하는 것과 같이 폭력과 관련된 행동 등이 있을 때 말리는 행동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음을 알고는 물품으로 냉찜질을 하는 행동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40여분 정도 사건현장에 있으면서 가해학생들을 말리고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조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학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학폭위에서는 청구인도 공원(동산)에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3.(수) 7교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청구인은 해당 교육에 참여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의 자취방에서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욕하고 때리는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폭력 사안을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세계 때려서 내가 맞는 것 같다. 적당히 때려’ 라고 폭력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부추기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학생은 본교 학생 5명, 타교 학생 4명으로 피해학생을 포함하여 관련 학생은 총 10명이었으며 사안을 접수한 후 사안의 위중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긴급하게 전담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긴급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의 학부모 의견제시 기회제공을 위한 유선과정에서 통화가 되지 않아 발생한 청구인의 출석정지 미고지 사안에 대하여 2019. 5. 27. 청구인의 부친과 유선상으로 절차적 누락에 대한 사과와 함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6. 11. 학폭위를 개최하여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는 약 70여 분간의 장시간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조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많은 부분이 적용되었다.

마.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현장에서 방관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중 1인으로 인식되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화시키는데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과 고의성은 없음(0점), 학폭위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양측 간의 화해할 여지가 없어 보였으므로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는 낮음(3점)으로 판단하였다.

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폭행, 폭언, 욕설, 협박 및 감금 행위 및 동행위 방조 행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관련학생들의 진술과 진술서,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사안

에 대한 이해와 사안의 경중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복수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조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교육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9. 5. 23. 21시경 다수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고등학교 인근 동산에서 폭행하였고 이어 ■■■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23시경까지 계속하여 욕설하고 폭행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 하지는 않았으나, 폭행현장에 40분 이상 가해학생들과 함께 있었다.

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2019. 5. 24.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경찰서, 교육청, 언론사에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사안을 우선으로 전달받아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5. 24. 청구인에 대해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 처분(2019. 5. 27. ~ 2019. 5. 31.)하였는데,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의견청취 없이 출석정지 하였고, 2019. 6. 14. 학폭위에서 추인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학폭위의 사전 의결 없이(사후 추인)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어 남용의 가능성이 있고, 출석정지 처분은 향후 진학 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출석정지 처분 전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 현장에 40분 이상 청구인 외 가해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학생이 폭행 당하는 것을 방관하였다. 가해학생 중 한명인 ■■■의 자취방 좁은 공간에서 피해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로 가해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구경만 하고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세게 때려서 내가 맞는 것 같다. 적당히 때려.” 라고 말하여 폭행을 조장하고 부추겼다. 청구인은 청구 외 가해학생들의 폭행을 방조함으로써 폭행에 가담하였다. 청구인이 직접 피해학생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가해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

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규정에 의거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판단하여, 총점 7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4일(1일 4시간, 총 16시간) 및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2019. 5. 27. ~ 2019. 5. 31., 긴급선도 조치 추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이 제2호, 제4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항에서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각성은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기간 등 피해 정도,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장 정도, 주변학생들의 심리적 동요 정도 등 주변학생 및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집단적 가해행위 여부, 힘의 불균형에 의한 감금 등 신체적 자유 제한 정도 등 가해행위의 집단화, 도구화, 잔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이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청구인이 폭력현장에 가해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을 방관하여 피해학생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중시켰으나,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심각성의 정도를 낮음으로 판단하였다. 반성정도는 사안조사 및 학폭위에 응하는 태도, 사안조사 중 학교생

활 및 수업태도의 변화 정도, 가해학생 반성에 대한 피해학생 및 주변 동료 학생의 평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청구인이 학폭위에 출석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수업태도의 변화가 없으며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반성정도를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화해정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입장, 보호자간의 갈등상황,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낮음으로 판단하였다.

학폭위에서는 선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출석정지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봉사 등의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라.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처분은 긴급선도조치에 따른 것으로 출석정지 전에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밖에 나머지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1. 피청구인이 201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일, 출석정지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중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